



무효화 신청 지침

티켓이 귀하 또는 귀하의 차량에게 발부되었거나 등록 소유자가 제공한 공증된 위임장을 귀하가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란을 확인하고 귀하의 티켓에 해당되는 모든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 **간주 인정:**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티켓 발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티켓에 대항하거나 티켓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에 대한 간주 인정(deemed admission)이 적용됩니다.
- **결석 판결:** 티켓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청문회 심사관이 정부의 증거를 바탕으로 볼때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기입할 경우에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무효화 신청을 인정하고 귀하에게 청문회 일정 조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관은 아래의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결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이 본 무효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 일 내에 기입되었음.
2. 귀하가 아래 사항을 입증함:
 - a. 귀하가 응답하지 않은 정당한 태만 사유가 있었음
 - b. 귀하에게 위반에 대한 충분한 방어 사유가 있음.

60 일 기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결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을 야기한 위반 사항에 무보험 운전 위반, 영상 단속 위반 또는 산만 운전 방지법 위반(예: 휴대전화)이 해당될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아래 사유로 결석 판결 또는 간주 인정이 기입될 날로부터 365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 무보험 (차량) 운행 - 티켓 발부 일자에 보험이 유효하였다는 증거.
2. 산만 운전 (1 차 위반) - 핸드 프리 액세스리 취득 증거 (문자 메시지 사용에 의한 위반은 제외)
3. 귀하가 위반 당시에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었거나 위반 당시에 차량 또는 등록 번호판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위반.

성명 (인쇄체)	주소	일자
서명		

본 신청서에 허위 이름 또는 주소를 기입하거나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DC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1,000 달러 이상의 벌금, 180 일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 법률 §22-2405).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dmv.dc.gov 를 참고하거나 DC 시내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DC 정부당국이나 공무원의 낭비, 부당행위, 남용행위를 보고하려면

DC 감찰국(Office of the DC Inspector General) 전화 1-800-521-163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